

유치원 규칙

- 제정 2003년 6월 24일 제1호
- 개정 2012년 3월 19일 제2호
- 개정 2014년 5월 01일 제3호
- 개정 2016년 3월 01일 제4호
- 개정 2017년 4월 05일 제5호
- 개정 2018년 4월 10일 제6호
- 개정 2019년 4월 08일 제7호
- 개정 2020년 2월 11일 제8호
- 개정 2020년 7월 22일 제9호
- 개정 2021년 2월 15일 제10호
- 개정 2022년 6월 30일 제11호
- 개정 2023년 12월 13일 제12호



전주풍남유치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주풍남유치원(이하 본원)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 원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견훤 왕궁로 16번지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학기,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 연한은 1~3년으로 한다. 단, 취학 유예자인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학년·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3. 본교 개교기념일: 5월 10일, 유치원 운영사항을 감안하여 5월 1일로 변경할 수 있다.
4. 여름방학, 겨울방학 및 학년말 방학
5. 유치원 재량휴업일
6. 기타 휴업일 :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유아 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 원의 학급수는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급 배정 기준에 의한다.

제8조(유아정원) 본원의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급편성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수업일수

제9조(교육계획의 수립) 유치원의 장은 매 학년도 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0조(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유치원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선정하여 수립 ·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등)

1. 수업일수는 연180일을 기준으로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치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2. 유치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2020.6.23.)(전북정책공보관-11147(2020.12.17.)). 다만 국가비상시에는 학부모가 요구할 때까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간은 일 4~5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한다.(단, 제반어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휴학·자퇴·퇴학·수료 및 졸업

제13조(입학) 1.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2. 신입 유아 선발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하며 당해 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3. 입학 시기는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료 및 졸업이 가능한 시점까지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제14조(재입학/편입학/전입학) 본 원으로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15조(휴학) 1.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의 장은 휴원서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2.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자퇴/퇴학) 1. 개인 사정으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2.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유치원의 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할 때(1개월 이상 무단결석)
- ②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수료 및 졸업) 1. 유치원의 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유치원 수업일수 최종일까지 학적을 보유한 유아에 한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2.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수업일수는 유치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3. 유치원의 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5세 유아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4. 유치원의 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4세 유아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6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제18조(목적)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4조 2항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1. 생활지도는 유치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행위를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로 한다.

- ①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유치원의 학급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③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④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⑤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⑥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⑦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⑧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⑨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⑩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제19조 제1항 10호 그 밖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

| 생활지도 범위 | | 지도 방식 |
|---------|--|---|
| 1 |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예) 반복적 지각 | · 유아 및 보호자에게 준수사항 안내 후 상담 실시 |
| 2 |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예) 하원 후 재등원(귀가동의서와 상이한 경우) | · 유아 및 보호자에게 준수사항 안내 후 상담 실시 |
| 3 | 교재교구, 시설 등이 파손될 정도 위험한 행위 예) 생활지도가 있었음에도 교재·교구 또는 시설 파손 | · 유아에게 주의사항 지도 철저 · 유아와 보호자 상담 실시 · 파손된 교재 교구 및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
| 4 | 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 예) 타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 | · 유아 및 보호자 상담, 주의 · 지속될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조치 |

2. 위 사항에 대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장2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0조(분리보관 가능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원장 및 교원의 교육적 판단으로 교육활동에 피해를 주는 물품

【제20조 제3항 분리보관 가능 물품】

| 요건 | | 보관기간 | 분리장소 | 처리방법 |
|----|---|------|-------------------|--|
| 1 |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 날카로운 도구, 장난감 칼·총, 공구, 레이저 포인터, 화학약품 등 | 당일 | 교무실 등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리고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관 경과 후 2일이 지나도 반환 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 2 |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 술, 담배 등 | | | |
| 3 | 기타 규칙으로 정하여 소지를 금지한 물품 예) 귀중품, 현금, 녹음기, 휴대용 전자기기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제21조(기타) 이 규칙 이외 기타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납입금 및 기타의 비용

제22조(수업료 및 기타의 비용) 본 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만3-5세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단가 전액 지원하며,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에게 방과후 과정비를 지원하고, 기타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7장 방과후 과정 운영

제23조(유아 정원 및 학급편제) 본 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 유아 정원 및 학급편제는 다음과 같다.

1. 본 원의 방과후 과정 학급 수는 방과후 과정 희망자에 의해 편성한다.
2. 본 원의 방과후 과정 유아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에 따른다.

제24조(교육내용) 본 원의 방과후 과정 교육내용은 교육과정의 연계활동과 특성화교육 및 보육활동으로 통합 운영한다.

제25조(교육일수 및 교육시간) 본 원의 방과후 과정 교육일수와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과정 교육일수 및 교육시간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운영한다.(방학 중 교육일수를 포함한다.)

제8장 규칙 개정

제26조 (규칙개정)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원 교무회의 후 개정 내용을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2. 본 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부 칙

1. (시행세칙) 본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2. 본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